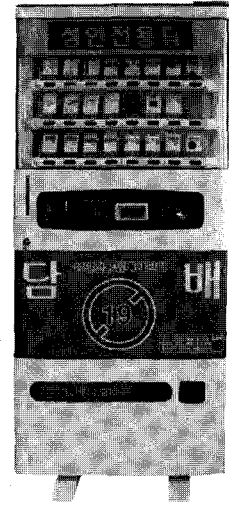


공공지역 흡연구역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있을 수 없다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산업계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정을 추진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고(안)에 있어서는 공공지역 흡연구역에 대해 담배자판기를 전면 철거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산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은 관련입법은 그동안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하는 자율대책으로 규제완화를 적극 주창해 온 산업계 입장과는 전면 대치되는 방향이기에 그 충격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만약 이 공고안대로 입법통과가 된다면 기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설치가 된 자판기들마저 전면 철거가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향후 담배자판기 설치로케이션도 극히 제약을 받게 되는 치명적 상황을 맞게 된다.

이같은 사태의 위급성 앞에 협회에서는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의 입장을 종합한 소견서를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에 제출하고 강력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이 건의안을 통해 공공장소 흡연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 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청소년 보호 등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는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는 산업계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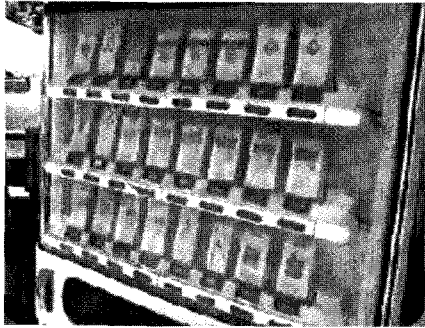
아울러 공고안 같은 강력 규제보다는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떳떳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길 요청했다.

공고안의 개정통과가 산업계와 협회의 바람과 같이 저지될 수 있을 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명분과 당위성과 부족한 규제만능주의적인 입법을 산업계가 그대로 수용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산업계가 일체단결해 현 관련 공고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일이다. 현재의 존립을 위협받는 담배자판기는 발상의 전환과 마인드 변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할 수 있기에 산업계의 결속력 있는 대응은 그만큼 중요성을 갖는다. 이번 사안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산업계의 권리라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취지 하에 금번 정책초점에서는 보건복지부 관련 부처에 제출한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업계 소견서 및 건의안 내용을 정리 게재 했다.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산업계 소견서



그동안 산업계는 합법적인 담배자판기 설치환경 확대를 진행하고자 담배자판기 외부설치 규제의 가장 큰 위해요인인 청소년 흡연 조장 문제에 대해 성인식별장치를 부착하는 산업계 자율대책안을 마련하고, 귀부에 공식적인 『담배자판기 건전한 시장육성 방안 건의』와 더불어 공공장소에 대한 담배자판기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공공장소 성인인식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한 질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귀부의 금번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이처럼 간절한 산업계의 의견이 수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 공공지역 흡연 장소에 설치된 담배자판기도 철거토록 하는 초강력안의 입법이 공고됨으로 인해, 산업계는 큰 충격과 당혹감을 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담배자판기를 아예 뿌리를 뽑아 유통기기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치 않겠다는 현행 검토안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규제만능주의적 발상으로서, 과연 이 초강경 규제가 어떠한 당위성과 명분으로 산업계의 간절한 자율대책을 일거에 뿌리 칠만큼 적법성을 갖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기보급된 60여만대의 담배자판기에 대해 비접촉형 IC카드를 이용한 성인인식장치를 도입해 2008년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를 전량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으며, 유럽의 독일,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도 청소년 흡연문제 해결을 위해 성인인식장치를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조류는 근본적인 청소년 이용 차단 시스템 부착을 의무화하여 과거의 담배자판기가 끼쳤던 위해요인을 해결하고, 독자적인 유통장비로서의 존재가치를 인정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現 국내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일 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 유통장비로서 필수적인 자동판매기 존재가치를 아예 인정치 않겠다는 극약처방으로서 그 입법 당위성과 목적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시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인인식담배자판기의 설치에 근본적으로 청소년의 담배구입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는 물론, 유인판매보다는 사용이 번거로운 까담에 흡연억제 효과까지 있습니다. 실례로 일본의 한 지자체의 경우 이 성인인식시스템을 도입한 후 자동판매기 판매량이 70%나 줄어든 사례가 입증되었다시피, 국내도 담배자판기 설치로 인한 위해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또한 기존 설치가 용인된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가 철수된다면 당장 산업적인 피해 역시 막대할 뿐 아니라, 향후 자판기 산업의 시장발전에 있어서도 크나 큰 한계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종합컨데 금번 흡연 구역에 대한 자판기 설치 금지 및 철거 검토안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함은 물론,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긍정적인 설치효과 측면을 전혀 인정치 않는 초강력 규제로서 도저히 이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산업계의 공식입장입니다.

하오니 산업계의 이러한 입장을 적극 수렴하시고, 담배자판기가 오히려 합법적인 설치환경을 확보하여 사회적으로 몇몇하고 자신 있게 그 존재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관련법을 개정해 주시길 강력 요청 드립니다.

담배자판기 건전한 시장육성 방안



1. 현행 관련규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 2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위반시: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 제1호[개정 1999.2.8, 2002.1.19.]

·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로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고 규정.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 11조 (소매인의 영업상의 의무)

① 법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구내소매인)

1. 구내소매인은 지상4층 이상의 고층건물, 공공기관, 역,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점으로서 100제곱미

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흥주점영업소(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규정된 영업점으로서 300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보유한 영업소에 한한다)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자동판매기)

1.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 소매인 또는 구내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2.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개정 관련규정 주요골자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5조(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중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고 규정 삭제.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령안 부칙

②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흡연구역내 담배자판기는 2003년 12월31일까지 철거하여야 한다.

2. 담배자판기 전면철거 부당성.

1) 법적인 문제점

-현행 담배사업자법에는 담배자판기를 소매인의 사유재산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있는 바, 이를 하위법령에서 금지시키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의 박탈행위이며 상

위법 우선의 법률 원칙에 있어서도 적용 불가.

2) 무책임한 행정 회피적 입법

-본 협회는 2001년 1월 8일, 당시 관련법중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있어 담배자판기 설치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설치가 가능하나 단,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는 규정에 대해

-현행 담배자판기가 자체 내에 신분증 인식을 통해 성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해 청소년 사용을 근본적으로 차단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채택된다면 위 조항에 완전 부합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및 7조의 해당구역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담배자판기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진행.

-하지만 이같은 유권해석에 대해 적법 불법여부를 명확히 유권해석을 내린바 없이, 정부 금연정책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회신만을 내린 후, 이제 와서 문제시 되는 관련조항을 아예 삭제하고, 흡연구역 전면 철거 조항을 입법화한다는 것은 명백한 합법성이 인정되는 골치 아픈 조항에 대해 아예 삭제해 버려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행정회피적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

3) 세계적인 조류를 무시

-디지털 기술발달 시대에 있어 이제는 신용카드가 현금을 대신하고, 각종 음성, 생체, 신분증 인식시스템 등의 각 생활분야 도입은 거부 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



-담배자판기에 있어 60만대이상의 제품이 보급되어 있는 일본은 청소년 흡연 문제 예방을

위해 비접촉형 IC카드를 이용한 성인식별장치를 도입해 2008년까지 기존 담배자판기를 전량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 중.

-유럽시장에 있어 담배자판기의 천국인 독일의 경우도 향후 5년에 걸쳐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자, 성인인증 담배자판기를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추진 중.

-또한 스위스에서도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시스템을 부착하는 작업을 적극 추진 중.

-이러한 세계적인 조류에도 불구하고 국내처럼 담배자판기 자체를 말본색원하겠다는 입법 추진은 시대적인 조류를 역행할 뿐더러, 명백히 본질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묘법을 인정치 않고 시대착오적 판단기준에 준거한 입법이라 아니 할 수 없음.

4) 청소년 흡연을 억제할 통한 담배자판기 활용방안에 대한 제고 측면

-국내에 활발한 금연 운동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 그 흡연율이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

-편의점 등 기존 유인담배판매 루트를 통해서도 청소년이 어렵지 않게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이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담배 구입 제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닌 성인인식을 통해 성인에게만 판매되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고 유인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청소년이 남의 신분증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담배구입 가능성은 제로(0%).

-이러 면에서 볼 때 담배유인 판매의 자판기로의 대체가 담배구입루트의 차단으로 청소년 흡연 억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으며, 아예 학교위생정화구역, 편의점 등의 로케이션은 유인판매를 금지시키고 자판기를 통한 판매만을 입법화시킨다면 그야말로 강력한 시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 질의를 통해 항

후 적극 검토의 필요성이 충분한 방안이라고 질의회신 받은 바까지 있음.

-분명컨대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확산은 청소년 담배 구입루트 차단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정 못할 극약처방이라 할 수 있으며, 여론에 있어서도 이러한 담배자판기를 적극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 하지는 않을 것임.

5) 국민건강과 담배자판기의 상관관계

-흡연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인인식 담배자판기가 기존 유인판매를 대체, 흡수하게 된다면 흡연욕구 유발 측면보다는 담배 1갑 구입을 위해 신분증 인식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담배자판기 이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일.

-결국 담배자판기는 꼭 담배가 필요한 사람들이 유인판매를 대신하여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이지 우려할 정도의 흡연욕구를 증가시켜 흡연을 증가에 일조하는 유통기기로 볼 수 없음.

6) 담배판매, 확실적인 유인판매 만이 최선인가

-담배 소매인들은 대부분 본연의 주업과 병행하여 담배 판매를 진행하는 현실에 미루어 볼 때 담배 유인판매에 따른 인력과 판매비용을 덜기 위해서는 점포 앞에도 담배자판기를 설치, 유인판매를 대체, 흡수 할 수 있게 해야 하나 현행법으로는 확실적인 대면판매만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

-유통구조의 대형화에 따른 소매점포의 감소,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 요인과 점차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라이프 사이클 변화요인을 고려할 때 유인판매와는 차별화된 무인판매 구조를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큼.

-담배자판기 외부설치가 합법화된다면 해도 이는 담배 유통구조의 확대로 연결되기보다는 기존 유인유통구조를 대체, 흡수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이기 때문에 유통구조의 선진화가 크게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산업계 희망 관련법령 개정방향

1) 1단계

▶현 공공장소 흡연구역 담배자판기에 대한 합법적 설치인정

현행

3. 법 제9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

개정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한 시설 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성인인식장치를 부착한 담배자판기에 한한다.

2) 2단계

▶소매인 관리가능 지역 전면 확대

현행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개정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출입구 전면 등은 소매인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역으로 성인인식장치를 채택해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여야 한다.

4. 개정명분에 대한 산업계의 주장

청소년 위해요인을 근본적 해결한 성인인식 담배자판기의 경우, 설치반대 및 철거의 명분과 당위성이 사라졌으며, 담배자판기 설치로 인해 국민 건강에 끼치는 위해요인은 오히려 유인판매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해외사례로 입증되고 있는 바, 건전한 담배자판기 설치환경을 이제는 세계적인 조류에 맞추어 인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을 위한 입법일 것임. ▣